

“발주자, 하도대 직접지급 원칙 확대해야”

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

2013년 09월 09일 (월)

이시봉 ✉ sblee27@kosca.or.kr



◇이종광 연구위원

하도급 계약 체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종광 연구위원은 최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6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확대 운영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하도급법에 직접지급 의무화 사유로 규정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화 △공공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직접지급 의무화 △공공공사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발주자 및 수급인에 대한 제재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해 무량한 하도급 업체도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도급대금이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최선의 제도로써 전문건설업체들의 40%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꼽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본래적인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총 6가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시봉 기자